

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11. 21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11. 22

다. 상 정 일 자 : 제133회 사하구의회(제2차 정례회)

제1차 총무위원회(2005.12. 5)상정

제4차 총무위원회(2005.12.14)상정.채택

## 2. 제안설명요지(박노선 세무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전자입찰 수행시 행정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입찰 참가 수수료를 폐지하여 입찰 참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골자

공사·용역·물품 입찰참가 신청 및 계약금액 2,000만원이상 수의 계약시 1건당 10,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한 별표 1의 관련 항목을 삭제

## 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28조 및 제130조

○ 입법예고 : 2005. 10. 10 ~ 10.30(20일간, 별도의견 없음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조례 일부개정안은 각종 입찰 참가방법이 전자입찰로 하는 것이 통례화 되어 있는데, 따른 입찰 참가자들의 참가 수수료를 면제해 주려는 것으로
- 입찰 참가자들은 전국 각 관공서에 여러수십건의 참가로 인해 많은 비용 부담이 되는 애로사항을 호소해 옴에 다른 것인데,
- 이는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수수료 면제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면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지만,
- 이들은 서민도 아니고 어느정도 재력이 있는 사업가들이라고 하는 점과 우리 구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양면성이 있음을 감안 신중히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